

의안번호	2208783
의 퇴 인	박희승의원
회 답 일	2025.3.18.
추계번호	24D118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5조의2제1항 (법원경비대)	법원보안관리대의 명칭을 “법원경비대”로 하고, 그 설치 목적에 “법관과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추가하려는 것임 (제1항)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5조의2제1항 (법원경비대)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신변보호”의 추가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現 법원보안관리대의 명칭을 “법원경비대”로 변경하면서 그 설치 목적에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라 법원보안관리대가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변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은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신변보호”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의2¹⁾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29조²⁾에 비추어 보면, 개정안에 따른 신변보호의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29조(조치유형)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외출·귀가 시 동행, 수사기관 출석 시 동행 및 신변경호
3. 임시숙소 제공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유사할 것으로 이해됨

[표 1] 피해자 신변보호의 종류와 내용

(단위: 명)

구분	종류	내용
시설	보호시설	장기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는 전문 보호시설로 연계
	임시숙소	신변위협으로 귀가 등 곤란한 피해자 등에게 일시 제공
	특정시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자 등과 그 친족,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일정기간 특정시설을 제공하여 신변안전 확보
	신변안전조치	
인력	신변경호	위협이 긴박한 신변보호 대상자는 한시적 경호 실시
	맞춤형 순찰	대상자의 생활패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순찰 실시
ICT 기술	112등록	112시스템에 신변보호 대상자 별도 등록·관리
	스마트위치	위치추적 및 SOS기능 탑재된 손목시계 형태의 ICT 장치 대여
	CCTV설치	대상자 주거지에 CCTV 설치, 위험요소 상시 확인, 휴대폰 CCTV앱으로 긴급신고 시 112종합상황실에서 비상 타워램프 작동하고 60분간 대상자 CCTV 화면 자동 송출, 경찰관 긴급출동
가해자	경고	가해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 실시
피해자	권고	피해자에게 일시적 피신 권고 및 관련 절차 안내·보조 실시
기타	신원정보 변경·보호	이름, 전화번호, 자동차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제도 활용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 신원정보 보호

자료: 염윤희·조정현·김혁,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 개선에 관한 경찰관의 인식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한국경찰학회, 2022.4.), 171-172면.

- 개정안에 따른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변보호 대상자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외에도, “법관과 법원직원”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위협하려는 자의 위치·동태, 범죄정황 등 범죄정보의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는 예산을 법무부 소관(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하고 있지만, 신변보호업무의 수행은 전문화된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음
 - 따라서 신변보호 관련 인력이 증원되고 관련 장비가 구비된다고 해도, 現 법원 보안관리대가 자체적으로 법관과 법원직원의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³⁾

4. 주거지 순찰강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비상연락망 구축

6.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3)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서는 4가지 원칙(① 신속한 접근, ② 수요자 중심, ③ 지역우선, ④ 다자간 협력)이 제시되고 있으며, 신변보호조치가 사법적 판단이 불필요한 신속하고도 초동적인 사실행위일 뿐만 아니라 경찰의 고유업무인 위험예방영역에 속한다는 점에서 경찰의 역할이 강조된다.(출처: 김동률·박노섭, “범죄

- 現 법원보안관리대의 정원은 994명이고, 대법원과 각급법원에 분산·배치되어 법정의 질서유지와 청사의 방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경찰 수준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2] 법원보안관리대의 직급별 정원: 2025.2. 기준

(단위: 명)

직급	5급	6급	7급	8급	9급	9급상당	계
경위	7	44	24	41			116
보안관리					822		822
보안					53		53
별정직						3	3
계	7	44	24	41	875	3	994

자료: 법원행정처

-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신변보호”의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참고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現 안전조치) 관련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3]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관련 예산내역: 2020~2025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신변보호 대상자	14,773	24,810	29,372	30,750	30,755	1,911 (1월 기준)
예산액	1,477	1,820	3,576	5,452	5,596	7,043
－ 민간경호	－	－	－	700	700	2,450
－ CCTV	565	565	933	1,396	1,703	1,703
－ 스마트위치	437	660	1,961	2,404	2,045	2,362
－ 임시숙소	475	595	682	952	1,148	528

주: 1. 2020~2024년은 결산 기준이며, 2025년은 예산 기준임

2.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이전비(이사비) 2억원은 제외된 금액임

자료: 경찰청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0권 제1호(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4.), 247-248면.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assembly.go.kr